

학생 대표자대상 혐오발언/성폭력 사건 접수 대응매뉴얼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1대 총학생회 성평등위원회 제작

목차

0. 지원자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
1. 사건 접수
2. 피해 호소 경청
3.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대응의 방향성
 - (1) 인권센터 접수 선택
 - (2) 학생자치 차원의 대응 선택
 - (3) 외부기관의 도움 선택
4. 의료 지원
5. 피신고인의 유형에 따른 공간 분리
6. 2차 피해 방지
7. 공론화
8. 학과 내규

피해자와 지원자는 함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평등한 주체이며,
지원자는 사건 해결과정에 있어 피해자를 고립시키지 않아야 한다.

또한 피해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하되,
선택에 있어 반드시 피해자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0. 지원자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

성폭력 피해는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다. 성폭력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은 진중한 태도로 임해야 하지만, 성폭력 피해 자체는 피해자 개인이 좌절할 만큼 참담하고 끔찍하기만 한 일은 아니라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피해자를 돕고, 해결해 나가면 되는 일이다. 단위가 너무 작고, 공동체 내부 인원들은 친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격적 분리가 어렵고, 문제 해결 자체가 힘든 작업이 될 수 있다. 이럴수록 지원자는 경각심을 갖고, 필요하다면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대표자로서 자신의 의무를 다하며, 공동체의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 본 매뉴얼에서 사용되는 명칭: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중앙대 학생회칙 참조

제2조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당사자'란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2. '피해호소인'은 직접적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공동체의 책임자가 사건을 접수하면 '피해호소인'은 '신고인'이 된다.

4. 공동체의 합의를 거쳐 사건이 성폭력 사건으로 규정되면 '신고인'과 여타의 피해당사자는 '피해자'로 규정된다.

5. '가해당사자'란 피해를 입힌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 및 가해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6. '가해지목인'은 '가해당사자'중 직접적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7. 공동체의 책임자가 사건을 접수하면 '가해지목인'은 '피신고인'이 된다.

8. 공동체의 합의를 거쳐 사건이 성폭력 사건으로 규정되면 '피신고인'은 '가해자'로, 여타 가해당사자들은 '가해책임자'로 규정된다.

9. 신고인이란 사건을 직접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10. 대리인이란 사건의 당사자가 자신의 발언권을 대리하도록 선임한 사람을 말한다. 11. 신뢰인이란 피해당사자의 심리적 안정을 목적으로 피해당사자를 동반하여 사건 과정의 전반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12. 참고인이란 사건과 관련은 없지만 혐의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자를 말한다.

13. 증인이란 사건과 관련 있는 자로, 본인의 경험에서 비롯된 사실을 진술하는 제 3자를

말한다.

14. 최종접수인이란 사건의 공론화 여부와 방식, 사건 해결 방식을 결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사건 접수

(1) 접수 방법

사건 접수 시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해 설명하며 사건에 대한 정보는 비밀 유지임을 공지한다. 이 과정에서 지원자는 사건에 대한 비밀유지 각서를 작성한다. 사건 정보는 피해자에게 사용 목적, 전달서류, 수신인이 포함된 정확한 정보를 고지한 후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제3자(의료 기관, 상담기관, 인권센터 및 인권대책위원회 등)에게 제공 가능하다. 신고 창구에 따른 사건 내용 공유 인원을 미리 설정하고, 최소한의 인원만 내용을 공유한다.

(2) 사건 공유 인원

* 최소한의 인원만 사건을 공유하고, 신고인이 사건 공유인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건 접수 경로와 이에 따른 공유인원을 설정한다. 또한 내부 사정에 따라 해당 지원자가 변경될 경우 피해자에게 먼저 양해를 구한다.

- ① 페이스북 메시지: 직책
- ② 전화 및 문자: 직책
- ③ 오픈 채팅: 직책
- ④ 방문: 직책 + 공간지킴이 (시간 명시)
- ⑤ 기타 (추가)

(3) 피신고인의 유형 구분 (단체 특성에 따라 구체화 필요)

* 피신고인의 유형에 따라 사건의 대응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구별이 필요하다.

- ① 학부생
- ② 졸업생
- ③ 대학원생
- ④ 교원[교수]
- ⑤ 직원

⑥ 외부인

⑦ 기타 (추가)

2. 피해호소 경청

(1) 사건 기록을 위해 녹음과 속기 가능 여부를 묻고, 신고인이 동의할 시 최소 1개 이상을 진행한다.

(2) 진술서를 통해 피해당사자의 개인 정보와 피해호소 날짜, 사건 개요 작성을 돕는다. 또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와 민감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자세히 설명하고, 동의할 경우 서명하도록 돕는다.

(3) 사건 개요를 작성할 때는 사건 발생 장소, 시간, 목격인 등의 정보를 최대한 자세하고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한다. 사건 발생 상황이나 피해 내용의 경우 피해당사자가 부담을 느끼지 않는 선에서 피해호소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다만, 사실관계 파악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정보가 누락됐을 경우, 피해당사자 지원 절차 진행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신고인에게도 전달한다.

① 피해당사자가 처음 피해를 호소한 기록(SNS 대화, 대나무 숲 제보 등)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② 단체 내부에서 어느 인원까지 사건이 공유되는지 알린다. 일단 신고인이 편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기본 절차 이후엔 피해호소를 듣고 공감하는 것에 집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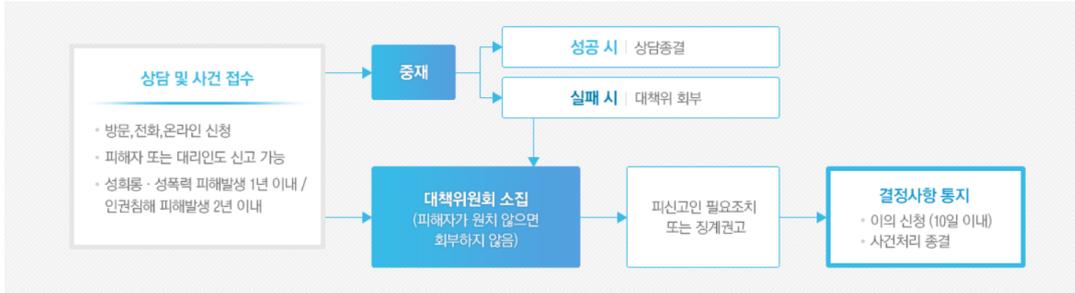
③ 이후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 상담 기관, 병원(추가)**을 비롯한 외부 단체의 리스트를 제공한다. 신고인에게 해당 리스트와 각 단체의 특성, 그리고 인권센터로 사건을 인계했을 때의 진행 절차를 안내한다.

3.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대응의 방향성

(1) 인권센터 접수 선택

: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중앙대 학생회칙'에 따라 최종 신고를 접수한 이후, 최종 접수자와 신고인은 피해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인권센터로 해당 사건을 신고할 수 있다. (이하 '공식절차'라 한다). 신고 접수 이외에도 상담만도 가능하며, 피해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제3자가 해당 사건의 대리인으로 활동할 수 있다.

- 인권센터의 절차는 크게 상담, 중재, 대책위원회 소집으로 나뉜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상담 이후 종결, 중재 시 신고인과 피신고인 모두 중재안 수락 후 종결, 중재 결렬 시 대책위원회 소집, 중재 없는 대책위원회의 총 4가지 과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신고인에게 알린다.



<그림1. 중앙대학교 인권센터 사건처리절차>

- 피해당사자가 직접 신고를 원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 대리인 위임장¹을 작성하고 대리인이 신고와 진술 전달을 맡는다.
- 피해당사자가 직접 신고한 후 제3자가 인권센터 피해자 대리인²으로 활동할 경우, 대리인은 피해당사자의 상담과 진술 절차에 동행한다. 대리인을 통한 활동은 물론 가능하나, 최대한 모든 절차에 피해자가 주체로서 직접 사건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안내한다.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인권센터

전화번호 : 02.820.6907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84, 310관 B306호

(2) 학생자치 차원의 대응 선택

: 사건의 해결-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중앙대 학생회칙(이하 회칙) 참조

제5조 (성폭력의 개념)

이 규정에서 성폭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행위의 의도와 무관하게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

- 성적 대상화 및 성차별에 기반한 행위를 가하는 것

- 상대방의 의지에 반하거나 의지와 관계없는 고정된 성역할을 강요하는 것

- 성적 지향성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

¹ 피해자 대리인 위임장 참고, 2019년 8월 8일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1대 총학생회 성평등위원회 제작

² 피해자는 조사과정에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반하거나 대리인을 내세울 수 있다.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 제4장 제21조 2항, 중앙대학교 인권센터

제6조 (성적 자기결정권)

① 모든 인간은 자신의 성적 행위를 스스로 선택하고 구성해나갈 권리가 있으며, 구체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리를 가진다.

1. 성적 대상이 아닌 동등한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 및 모욕당하지 않을 권리

2. 상호 동의가 없는 성적 접촉이나 성적인 행위 및 성에 관한 대화를 거부할 권리

3. 자신의 성생활에 대한 불필요한 질문이나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

② 공동체의 대표자는 구성원을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로부터 보호하고 구성원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성적 자기결정권의 실현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가진다. 또한 직접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의 실현을 가로막는 환경이나 언행은 비판과 시정의 대상이 된다.

③ 공동체의 대표자는 제2항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의무를 가진다.

제12조 (사건의 해결)

① 사건의 해결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반드시 포함한다.

② 사건 평가에 앞서 사건 당사자들이 합의할 수 있는 사건 경위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사건 경위가 밝혀지면 공동체는 사건이 문제적인지, 문제라면 어떤 점에서 문제적인지, 누가 얼마나 책임이 있는지, 어떤 원인에서 비롯되었는지, 공동체는 어떤 책임이 있는지,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인지 등 사건의 성격과 책임에 대해 명확하게 평가해야 한다.

1. 평가 과정의 투명성과 개방성: 평가 과정은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모든 구성원들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2. 사건의 기록: 사건 해결의 주체는 사건의 경위와 해결 과정, 토론에서의 쟁점들을 공식적, 공개적 기록으로 남기고 보관하여 이후의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공동체는 공동의 평가에 기반하여 가해자에 대한 징계, 후속토론, 평가서 및 입장서 발표, 사건에 관한 홍보, 공간 분리 등의 실천적인 조치를 도출해야 한다.

1. 조치의 입안: 조치는 제11조 제2항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공동체적 논의를 거쳐 도출되어야 하며 제11조의 '공동체적 해결'의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가. 피해자 중심적 해결: 사건 조치 도출의 과정에서 조치 담당자는 '피해자 중심적 해결'에 입각하여 조치를 진행한다. 피해자 중심적 해결은 사건을 해석할 때 가해자의 의도, 경험보다는 피해 당사자의 진술, 경험, 관점을 중심에 두는 것이다. 이를 위해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의 2

차 가해를 막고, 피해자의 피해 호소를 진지하게 고려하며 그의 입장에서 사건을 해석하려 노력할 의무를 지닌다.

나. 입안의 절차: 최종 접수인을 포함한 학생회 또는 대책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조치 도출을 위한 공동체적 논의의 장을 열 수 있다. 일시와 진행 방식을 비롯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동체의 상황에 따라 최종 접수인을 포함한 학생회 또는 대책위원회, 피해자와 가해자를 비롯한 사건 관계자의 합의를 통해 정한다.

15. 징계

: 최종 접수인을 포함한 학생회 혹은 대책위원회 등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 사건의 최종 접수인은 공간 분리의 원칙에 따라 피해자(호소인)와의 협의를 통해 사건 처리가 완료되기 이전까지 피신고인의 공동체 행사 참여를 임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

- 비공개 사과문

- 공개 사과문: 소속 단과대학과(부) 성(姓)을 포함한 사과문을 온·오프라인 게시하는 것을 의미.

- 학생자치공간 출입금지: 일정 기간을 특별히 명시할 수 있음.

- 학생자치행사 제외: 학생자치기구에서 진행한 사업 및 행사 참여를 금하는 것을 의미.

- 학생자치활동 제외: 학생자치활동으로 인정되는 집행부, 동아리 등의 활동을 금하는 것을 의미.

3. 조치의 집행: 결정된 조치는 실효성 있게 집행되어야 한다. 사건의 당사자는 조치의 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추가적 조치: 해결방안 도출 이후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해졌을 때는 사건 해결의 주체는 이를 공론장에 다시 상정할 수 있다.

- ① 해당 단체 학생대표자가 최종 접수인이 될 경우, 총학생회 성평등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최대한 해당 공동체의 학생회 인원을 포함한 대책위원회³를 구성한다.
- ② 학생회 및 대책위원회는 회칙 제5조, 제6조의 성폭력과 자기결정권의 개념과 제12조 3항의 사건에 대한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사건을 판단해야 한다.
- ③ 회칙 제12조 4항 1호에 따라 공동체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피해자 중심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결정된 수위의 중재를 진행하며, 결렬될 경우엔 징계 결정으로 넘어간다.
- ④ 피해당사자가 가해당사자의 처벌을 원할 경우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대상으로 사건의 경위를 조사한다. 경위조사를 이후, 피해호소와 사건경위조사를 바탕으로 내부 논의를 거쳐

³ 본 매뉴얼에서 가리키는 대책위원회는 징계를 위한 대책위원회가 아닌 대응을 위한 대책위원회, 즉 <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중앙대 학생회칙> 제7조 ③, 2항의 '대책위원회'와 같은 의미임을 명시한다.

징계수위를 결정한다.

⑤ 피해당사자나 피신고인이 이의제기를 원할 경우 1주일 내에 가능하다. 이의제기 사유를 고려하여 이의제기 날짜의 1주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내린다.

⑥ 결정한 징계를 가해자가 소속된 공동체에 전달하고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한다.

- 사과문 작성이 징계 후보에 있을 경우, 해당 징계 채택 이전에 가해자가 사과문에 반드시 포함하길 바라는 내용을 피해자에게 물어본 후 이를 가해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3) 외부기관의 도움 선택

① 전문 상담센터, 사법적 도움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병원(추가) 등을 포함해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들이 정리된 문서를 신고인에게 전달하며 안내한다.

② 피해당사자가 외부기관에 상담을 의뢰할 때 정보제공에 동의한다면 신고인을 통해 해당 단체에서 피해호소 과정 중 수집한 정보를 외부기관 측에 제공한다.

③ 사법 절차 진행 시 무료 법률 상담, 변호사 지원과 같은 사법 지원 제도를 안내한다. 또한 피해자가 원할 경우, 법적 절차에 해당 단위 담당자가 동행한다.

4. 의료 지원

피해당사자가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성폭력 전문 의료 센터가 있는 병원을 방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피해당사자가 원할 경우 피해자와 함께 병원까지 동행한다.

5. 피신고인의 유형에 따른 공간 분리

피신고인이 학내 구성원일 경우 피신고인의 유형에 따라 가장 먼저 피해당사자와 피신고인의 공간분리를 진행한다.

(1) 재학생: 수업과 공간 분리를 즉각적으로 해당 학과장에게 신청한다. 이를 어기거나 피해자에게 사적 연락을 시도할 경우 인권센터 대책위원회와 학생처 주관의 학생상벌위원회에 불응 사실이 전달된다.

(2) 교원[교수]: 해당 학과 학과장에 이를 알리고 피신고인의 수업 즉각 중단을 요청한다. 또한 피해자에게 사적 연락을 시도할 경우 인권센터 대책위원회와 교원징계위원회에 불응 사실이 전달된다. 학과장이 피신고인일 경우, 해당 단과대 학장에게 동일한 내용을 요청한다.

(3) 직원: 해당 부처 부처장에 이를 알리고 직무정지와 공간분리를 요청한다. 또한 피해자에게 사적 연락을 시도할 경우 인권센터 대책위원회와 일반직원징계위원회에 불응 사실이 전달된다.

(4) 외부인: 피신고인에게 중앙대학교 내 출입금지를 요청한다.

- 학내 구성원일 경우 공적인 영역에서 공간분리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피 해당사자에게 미리 고지한다. (예: 공적 행사의 뒤풀이, 건물 복도 등)

6. 2차 피해 방지

1) 2차 피해란?

성폭력 2차 피해의 개념에 대하여는 지금까지도 다양한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1차 피해의 원인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잘못에 있다는 논리를 근거로 피해자를 비난함으로써 가해자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입장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위 규정 제22조 제2항 제3호의 '기타의 방법'을 정의하자면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바탕으로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해를 끼치는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⁴

학생대표자가 범할 수 있는 성폭력 2차 피해의 예시로는 피해자 비난, 화간 의심, 무시, 무성의, 불친절, 부정적 견해, 합의 강요, 사생활 침해, 신변 위협, 절차 고지 안내 부족, 반복 진술, 신뢰 관계인 동석 거부, 무고 위협⁵과 피해 사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훈계하거나, 냉소적 혹은 원인 제공자라는 시선을 보내는 것⁶ 등이 있다.

익명 커뮤니티, 대자보 등 다양한 경로로 이루어질 수 있는 2차 피해가 확인되면,

- 2차 피해 관련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 인권센터에 인계하여 처리한다.
- 학과 학생회 차원에서 2차 피해 줄이기 캠페인을 다양한 방식 (재학생 대상으로 2차 피해에 관한 교육 진행, 기자회견, 카드뉴스 제작 등)으로 진행한다.

7. 공론화

피해자가 공론화를 원할 경우 '대자보 작성', '손글씨 캠페인'(추가) 등을 통해 사건을 공론화한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해당 공동체에 속할 경우, 사건당사자들과 지원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본 후 공론화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사건의 경중에 따라 특수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신중하게 공론화 방식을 결정한다.

⁴ 중앙대학교 인권센터 사건번호 A2018-01-04(동아리 내 성폭력 2차 피해)

⁵ 권김현영, 『피해와 가해의 페미니즘』, 교양인, 2018, 31-32 참조.

⁶ 한국방송학회, 『온라인 성희롱 성폭력 및 여성혐오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105 참조.

- 학내 단위들에 연대를 요청한다.
- 성명서를 SNS에 게재하고 대자보를 붙인다.
- SNS를 통한 손글씨 캠페인을 진행한다.
- 피신고인 징계 촉구를 위한 연서명을 진행한다.
- 외부언론에 취재 요청서를 발송한다.
- 기타 (추가)

* 공론화를 선택할 경우, 학내를 넘어서 외부 단위까지 더 많은 공동체가 연대할 수 있고 문제 해결에 박차를 가할 수 있으나 2차 피해의 발생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점을 충분히 안내한 후, 신중히 선택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함. 지원자의 경우에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당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해야 함. 사건별로 상이한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공론화의 방식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함.

8. 학과 내규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중앙대 학생회칙>과 같은 학과 회칙 또는 규정을 제작하여 대응 방식과 사건 해결 절차, 대책위원회 구성 등의 수립과정을 의결을 거쳐 수립한다.